# 건설이슈포커스

#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2022. 5

최수영 · 이승우

■ 들어가며 ·······	4
■「건설기술 진흥법」안전관리비 주요 내용	7
■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14
■ 아저과리비 활용 초지 박아	25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하지만,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 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 이 필요해 차이가 있음.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 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별로는 건축사업에서 ②항목(정기안전점검비)과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각각 43.06%, 41.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토목사업에서는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이 47.12%,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40.9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점차 확대· 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 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 책', 그리고 기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건설현장 주변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적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일괄요율 방식이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 +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함.
  -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 활용도가 낮고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안전 관리비 요율 방식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항목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 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 들어가며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근거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근거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생 략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8 가지 항목에 사용 가능하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1항에

#### 따라 7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함.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경비)제3호 및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경비에 포함해야 함.¹)
- ▶ 관련 법령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두 안전관리비용을 구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 비를 제외한「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 및 제공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sup>2)</sup>에서는 현장 경비를 2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로 구분하고 있음.
  - 완성공사원가통계의 현장 경비 29개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되는 26가지 경비 세비목을 포함하며, 추가로 3가지 세비목(감가삼각비, 하자보수비, 현장관리비)을 포함함.

<sup>1) (</sup>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 26가지 경비 세비목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sup>2)</sup>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작성 및 제공하는 통계로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통계자료를 건설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임.

〈표 2〉 공사원가계산서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 세부 비목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서				완성공사	원가통	
1	전력비	16	소모품비	1	전력비	16	소모품비
2	수도광열비	17	여비·교통비·통신비	2	수도광열비	17	여비·교통비·통신비
3	운반비	18	세금과공과	3	운반비	18	세금과공과
4	기계경비	19	폐기물처리비	4	기계경비	19	폐기물처리비
5	특허권사용료	20	도서인쇄비	5	특허권사용료	20	도서인쇄비
6	기술료	21	지급수수료	6	기술료	21	지급수수료
7	연구개발비	22	환경보전비	7	연구개발비	22	환경보전비
8	품질관리비	23	보상비	8	품질관리비	23	보상비
9	가설비	24	안전관리비	9	가설비	24	안전점검비
10	지급임차료	25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비	10	지급임차료	25	퇴직공제부금비
11	보험료	26	기타법정경비	11	보험료	26	기타법정경비
12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27	감가삼각비
13	보관비			13	보관비	28	하자보수비
14	외주가공비			14	외주가공비	29	현관장리비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	안전관리비		

-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진훙법」안전관리비의 주요 내용과 계상실태를 살펴보고, 건 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성화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제2장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계상-계획 및 승인-사용 및 확인-설계변경 및 정산)로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실태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비 계 상기준을 조사함.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안전관리비 활성화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Ⅱ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계상'-'계획 및 승인'-'사용 및 확인'-'설계변경 및 정산'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1. 계상

-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 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제1항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 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의 안전관리비 항목에 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래 표의 7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함.

〈표 3〉「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에 따른 항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 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 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 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 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5. 공사시행 중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 데 필요         한 비용       한 비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 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5가지 안전관리비 계 상항목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에 따른 7가지 사용가능 항목과는 차이가 있음.
-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침에 명시된 ⑤항목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⑤, ⑥, ⑦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을 7가지로 구분하고 있기에 안전관리비 항목은 크게 7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침 제51조제2항), 발주자는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3가지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함(지침 제51조제3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용 산정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제 50조에 명시되어 있음. ②항목인 안전점검 비용만이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요율화되어 있으며 ⑦항목에 대한 기준은 없음.
    - (①항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지침 제46조) :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인건 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 산정
    - (②항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지침 제47조) : [별표 8]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 범위에서 가산 가능
    - (③항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지침 제48조) : 토 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 (4항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지침 제49조) :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 (⑤, ⑥, ⑦항목)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지침 제50조)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계상은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하여 산출

-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한 벌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벌칙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 계획 및 승인

-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포함됨(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명시된 7가지 사항: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포함),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포함), ④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u>안전관리비 집행계획</u>,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됨.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4가지 항목(가. 건설공사의 개요, 나. 현장 특성 분석, 다. 현장운영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중 다. 현장운영계획에 포함됨.
  - 현장운영계획의 5가지 세부항목 : 1)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안전관리비 집행계** 획, 4) 안전교육계획,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는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포함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청 혹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숭인받아야 함.
  -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함.

- 🕨 안전관리비 계획 및 숭인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법 제88조(벌칙)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9조(벌칙)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시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 법 제91조(과태료)제3항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시공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사용 및 확인

- 시공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만 사용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설사 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공자는 지침 제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③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 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 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사항)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 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 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계상기준과 동일하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1년 6월 29일 개정을 통해 아래 항목이 사용 가능 항목에 추가되었음.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중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중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4. 설계변경 및 정산

-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아래 표의 4가지 사유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중액 계상해야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제1항에는 안전관리비 변경·추가가 필요할 경우, 시공자가 내역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통해 설계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공사기간의 연장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안전관리비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실적에 따라 정산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는 시공자가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지침 제54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은 감액조정혹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내용을 계상 → 계획 및 승인 → 사용 및 확인 → 설계변경 → 정산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4\	아저과기비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즈이내요	НΙШ
\ <del>T</del>	4/	건선된니비화	연습한인도한단니다	ᅮᅭ네ᄎ	11 TIL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ul> <li>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li> <li>7가지 항목이 개별 계상기준을 가지며,</li> <li>② 안전점검비용만 요율화</li> </ul>	<ul> <li>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li> <li>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일괄 요율화</li> </ul>
계획 및 승인	<ul> <li>●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자) → 검토·확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li> <li>→ 승인(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li> <li>● 착공 전 총괄안전계획 승인 필요</li> </ul>	<ul> <li>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사업주) → 전문 가 검토 → 심사(고용노동부장관)</li> <li>착공 전 계획서 제출</li> </ul>
사용 및 확인	<ul> <li>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li> <li>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li> </ul>	<ul> <li>■ 지침 제7조 : 8가지 사용 가능항목</li> <li>■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li> <li>■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li> <li>■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li> </ul>
설계변경	<ul> <li>안전관리비 내역 작성(시공자) →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승인(발주자)</li> <li>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한정</li> </ul>	■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 계상해야 함
정산	■ 실적에 따라 정산 ■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 가능	■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 가능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 일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2번 항 목인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일괄 요율화되어 있음.
  - 안전관리비는 7가지 계상 항목 중 안전점검비용만이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 전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요율화되어 있음.
-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 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 두 비용계획이 포함되는 계획서 작성 주체는 시공자로 동일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

- 장관이 심사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청 혹인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이 필요한 계획서로 차이가 있음.
-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에는 8가지 사용 가능항목과 세부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별표 2]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별표 3]에는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주가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 게 확인받아야 하며, 안전관리비는 시공자가 분기별로 사용현황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을 보고해야 함.
- ▶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즉시 조정 계상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는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 변경·추가가 필요할 경우, 내역 작성(시공자) → 검토·확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승인(발주자) 절차를 거쳐야 함.
- ▶ (정산)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실적에 따른 정산 대상 비용임.

# Ⅲ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 1.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 대한건설협회의 협조를 통해 15개 시도별로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을 확보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및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분석함.
  - 이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비용(경비 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 비용)을 종합하여 '안전관리비성 비용'으로 정의함.
  - 분석한 공사내역은 총 58개이며, 이 중 토목사업이 28개, 건축사업이 28개, 조경사업이 2개임.
- ▶ 58개 공공사업의 발주기관은 지자체, 교육청, 소방청, 공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사종류 또한 매우 다양함.3)
  - 지자체별 샘플 수는 서울(6), 부산(5), 대구(3), 광주(2), 대전(5), 울산(4), 경기(5), 강원(2), 경북(2), 경남(3), 전북(3), 전남(7), 충북(6), 충남(4), 제주(1)임.
  - 공사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토목에 해당하는 표본의 평균 공사 규모는 약 327억원임. 건축에 해당하는 표본의 평균 공사 규모는 약 138억원임.

# (1)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 58개 사업 중 안전관리비 7개 항목 중 한 항목 이상 계상된 사업이 38건(66%)이며, 미계상된 사업이 20건(34%)으로 파악됨. 공종별로는 계상된 38건 중에서 토목이 24건 이고 건축이 14건으로 나타남.

〈丑!	5>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분석	결과
-----	----	--------	----	------	----	----

구분	건축	토목	조경	계
· 총 대상	28개	28개	2개	58개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	14건(50%)	24건(86%)	_	38건(66%)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14건(50%)	4건(14%)	2건(100%)	20건(34%)
평균 공사금액(백만원)	13,842	32,667	406	24,219

<sup>3)</sup> 건축사업에는 학교, 체육센터, 도서관, 임대주택, 행복주택, 경찰서, 기숙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목사업에는 도로, 지하차 도, 하천재해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단지조성, 우수저류시설, 연도교 등이 포함됨.

- ▶ 28개 건축사업에서 한 항목 이상의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한 경우가 14건(50%),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가 14건(50%)으로 안전관리비성 비용 자체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계상된 건축사업의 경우, ②항목이 계상된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⑤항목이 6건, ①항목이 5건으로 나타남. 즉, 계상된 14개 사업의 대부분은 ② 항목인 정기안전점검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머지 항목의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①항목은 5건 중 4건, ②항목은 12건 중 11건이 경비 안전관리비에 계상되는 반면 ④항목은 모두 직접공사비, ⑤항목은 6건 중 5건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로 안전관리비성 비용의 계상 위치가 다른 경향이 있음.
- 28개 토목사업에서 한 항목 이상의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한 경우가 24건(86%),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가 4건(14%)으로 대부분 사업에서 안전관리 비성 비용이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계상된 토목사업의 경우, ④항목을 계상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⑤항목이 15건, ②항목이 14건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음.
  - 건축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②항목은 경비 안전관리비에 계상되는 경우가 각각 7건 중 5건, 14 건 중 13건이었으나, ④, ⑤항목은 각각 22건 중 19건, 15건 중 13건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었으 며, ③항목은 5건 모두 직접공사비에 반영됨.
  - 즉, 토목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 ④, ⑤항목의 계상 빈도가 건축사업과 비교해 높으며, 대부분 직접공 사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6〉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실태

	건	!축	토목	
안전관리비 항목	안전관리비 계상 표본 수	직접공사비 내 포함 표본 수	안전관리비 계상 표본 수	직접공사비 내 포함 표본 수
①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4	1	5	2
② 정기안전점검비	11	1	13	1
③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1	1	_	5
④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3	3	19
⑤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1	5	2	13
⑥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1	1	-	_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 구축·운용 비용	_	_	-	_

- (2) 항목별 총공사비 대비 안전관리비성 비용 비중
  -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
    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분석됨.⁴)
    - 건축사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비용인 ②항목인 정기안전점검비가 총공사비의 0.052%를 차지하였으나, 토목사업에서는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이 총공사비의 0.857%,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 비용)이 총공사비의 0.587%로 파악되어 차이를 보임.
    - 토목사업에서 총공사비 대비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1.649%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어, 건축사업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토목사업에서 ④, ⑤항목의 안전관리비는 공사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과거부터 안전관리비성 비용의 상당한 비중이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임.
    - 또한, 분석 대상인 24개 토목사업이 주로 선형공사에 치우쳐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수치가 토목사업의 안전관리비성 비용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토목사업은 ④, ⑤항목이 직접공사비에 주로 반영되며, 건축사업 대비 안전관리비성 비용의 집행 규모가 크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고축사업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성 비용에서 ②항목과 ⑤항목이 각각 43.06%, 41.39%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된 금액과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금액 이 비슷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음.

〈표 7〉 건축사업 항목별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 비율

항목	평 <del>균금</del> 액 (원)	총공사비 대비 비율 (%)	안전관리비성 비용 내 비중 (%)
①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492,709	0.004	2.89
② 정기안전점검비	7,342,459	0.052	43.06
③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964,035	0.010	6.65
④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99,936	0.001	0.59
⑤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7,058,222	0.075	41.39
⑥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267,857	0.003	1.57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 구축·운용 비용	-	_	_
Ä	17,051,564	0.149	100

<sup>4)</sup>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공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추가로 반영되었지는 여부는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사업 의 최종 안전관리비 반영 금액은 분석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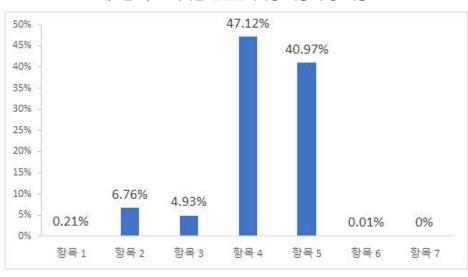


〈그림 1〉 건축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구성 비중

- ▶ 토목사업에서는 ④항목이 47.12%, ⑤항목이 40.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은 대부분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 ②항목의 경우, 계상 건수는 14건으로 많은 사업에서 반영되었으나 금액 비중으로는 6.76%에 그침. ②항목이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비에 계상되는 비용이라고 볼 때 토목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안전관리비 성 비용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8〉 토목사업 항목별 안전관리성 비용 계상 비율

항목	평균금액 (원)	총공사비 대비 비율 (%)	안전관리비성 비용 내 비중 (%)
①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1,452,480	0.012	0.21
② 정기안전점검비	46,325,618	0.152	6.76
③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33,766,854	0.041	4.93
④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322,745,983	0.857	47.12
⑤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280,677,601	0.587	40.97
⑥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35,714	0.0001	0.01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 구축·운용 비용	-	_	_
Ä	685,004,251	1.649	100



〈그림 2〉 토목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구성 비중

- 🕨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계상 건수와 금액 비중에서 공통적으 로 ②항목(정기안전점검비)과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 비용)의 활용도가 높으며. ① ②항목은 경비 안전관리비에, ③・④・⑤항목은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항목별 안전관리비성 비용의 계상 규모로 볼 때 ①, ③, ⑥, ⑦항목은 모두 합해서 전체 안전관리비 성 비용의 10% 미만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업장 경계가 가설울타리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축사업에서는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활용도가 낮으나, 사업장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외부 차량 및 보행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토 목사업에서는 해당 비용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2. 발주기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1) 조달청

- 조달청의 제경비 검토기준 중「건설기술 진흥법」안전관리비 검토기준을 분석함、
  - 조달청 안전관리비 검토기준은 2019년 개정되었으며, 건축과 토목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조달청 내부 검토기준은 2021년 9월 조달청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받은 자료임.
- 🦆 조달청에서는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을 직접공사비 항목과 간접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 관리하고 있음.

- 직접공사비 항목: 안전관리비 ③, ④, ⑤항목이 직접공사비 항목에 해당됨. 건축사업의 경우 ③, ④, ⑤항목이 계상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
- 간접공사비 항목 : 요율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①, ②, ⑥항목이 이에 해당됨. 2019년 기준 개정 당시 ⑦항목 기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 내부기준에 누락되어 있지만, ⑦항목도 간접공사비 항목에 포함됨.

#### 〈그림 3〉 조달청 제경비 검토기준 중 안전관리비 검토기준

#### 6 안전관리비( '19, 7, 18,)

#### □ 설계 반영

- (직접공사비 항목) 그대로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내역을 <u>직접공사비 항목으로 추가 반영\*</u>
  - \* 예)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설계 반영) 교통안전로봇, 교통정리원 → (추가반영) 경광등, 표지판, 라바콘 등

#### 〈직접비 산출 항목〉

직접비 항목

- ① 발파・굴착 등 건설공시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②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③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 (간접비 항목) 해당 항목은 요율\*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으로 산출해야 되는 항목이므로 간접비 항목으로 반영 → 공사원가 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고정비용)으로 반영
  - \* 순공사비(총공사비 중 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제외, 지급자재비는 포함)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간접비 산출 항목〉

간접비 항목

-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② 안전점검 비용
- ③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 □ 설계 미반영(수요기관 추가 요청)

- 설계보완(수량산출, 설계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수량·금액 산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 수요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간접비 항목으로 반영 → 공사원가 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고정비용)으로 반영
-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건축사업의 경우 ①, ②항목만 계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모

#### 든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계상함.

- 조달청 담당자 인터뷰 결과, 안전관리비에 계상되는 항목은 ①, ②항목이 대부분이며, 교육청 사업에 서는 ⑥항목을 포함하여 계상하는 사례가 있음. 토목사업에서는 ③, ④, ⑤항목이 직접공사비에 계상 되고 있음.
- 조달청도 안전관리비 ③, ④, ⑤, ⑦항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특히 건축사업)이나, 조달 청 내부적으로 별도의 계상기준은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임. 조달청은 대부분 외부 공공기관의 설계내 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전관리비는 설계내역에서 항목별 구분없이 1식으로 발주되며, 안전관리비 산출근거 는 낙찰받은 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공함.
  -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 산출근거에 ①, ②, ⑥항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 가능함.
  - 하지만, 안전관리비 산출근거는 주로 정산자료로 활용되며, 안전관리비 산출근거는 낙찰받은 자가 요 구할 경우에 제공되지만, 착공 전에 이를 요구하는 시공자는 많지 않음.
  - 지자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비용과 정기안전점검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상황임.

#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LH는 주요 공공 발주기관의 하나로서 다른 공공 발주기관의 제도 및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LH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LH 제경비 산정기준'을 검토함.
- 💺 LH 제경비 산정기준에 제시된 18가지 경비 항목 중 자체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8가 지(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일반관리 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이며, 이외 항목은 국토부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함.
  - 안전관리비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비만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항목은 자체기준에 따 라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18가지 항목 중 산출방법이 요율이 아닌 항목은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 검비 제외)와 품질관리비가 유일함.
- ▶ LH 제경비 산정기준상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안전점검비용 항목을 반영한 것에서 출발하여 2020년 3월에는 7가지 항목으로 점차 확대됨.
  - 2011년 11월 : 정기안전점검비(②항목) 반영

- 2016년 2월 :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①항목) 추가
- 2019년 6월 :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⑥항목) 추가
- 2020년 3월 :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③항목),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④항목),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⑤항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 축·운용 비용(⑦항목) 추가로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 모두 계상
- LH 제경비 산정기준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7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계상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②항목은 법적 기준, 나머지 6개 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체 기준 운용 항목 중 ①, ⑥항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고 나머지 항 목은 지구당 정액으로 산정되고 있음.

⟨# 9⟩ I H	아저과리비	계상기주(2021년	1원	기주)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시점	산정기준	비고	
①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16.02.02 이후	자체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직접인건비+제경비(110%)+기술료(20%)	
② 정기안전점검비	'11.12.30 이후	법적 기준	$\Sigma$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원가 $ imes$ 적용요율)	
③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20.03.18 이후	자체 기준	지구당 정액	
④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20.03.18 이후	자체 기준	지구당 정액	
⑤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20.03.18 이후	자체 기준	지구당 정액	
⑥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19.06. 이후	자체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직접인건비+제경비(110%)+기술료(20%)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 구축·운용 비용	'20.03.18 이후	자체 기준	지구당 정액	

- 또한,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LH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⑦ 항목과 관련성이 높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범위 및 기준을 수립함(21.6).
  - 2019년 8월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스 마트 안전장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확대 적용을 위해 지침 개정 이후('19.4.30) 입찰공고 건설공 사(300억원 이상)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추진 사항을 파악한 바 있음.

- 🝃 'LH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타워크레인 IoT CCTV를 포함 한 15가지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설치 가이드를 명시함.
  - 가이드라인은 15가지 스마트 안전장비 장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목적, 주요내용, 적용효과, 설치 비용, 제품규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10〉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가이드라인('21.6)

구분	내용
1. 타워크레인 IoT CCTV	■ 설치비용: 고해상도 카메라(2대) + 무선통신장비 = 855만원 ■ 안전관리비: ⑤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 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2. 지능형 AI CCTV	■ 설치비용: 고해상도 카메라(1대) + 영상분석서버(딥러닝분석) = 약 1,000만원 ■ 안전관리비: ⑤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 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3. 스마트 안전모	■ 설치비용: 스마트 안전모(3개) 458만원[loT안전모 313만원 + 145만원(통신비)] ■ 안전관리비: ⑤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 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4. 스마트 안전고리	<ul> <li>■ 설치비용 : 스마트 안전고리(추락위험지역 접근감지 방식) 15만원, 스마트 안전고리(고도 감지센서 방식) 70만원 등</li> <li>●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li> </ul>
5. 중장비 접근 감지	■ 설치비용 : 장비 센서(차량) 43만원/장비기사 알림(경광등) 70만원, 안전모/안전 턱끈태그/센서(활용 시) 5만원~12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6. 위험지역 접근 감지	■ 설치비용 : 위험지역 경광등/사이렌 75만원, 안전모/안전턱끈태그/센서(활용 시) 5만원~12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7. 스마트 헬스케어	■ 설치비용 : 심박수밴드 10만원(응급버튼 추가 시 + 3만원), 스마트 워치 50만원 (데이터 매핑 및 시그널 로직구성 시 + 450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8. 다국적 언어번역기	■ 설치비용 : 다국적 언어번역기(Portable) 80만원(현장용어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스마트폰 무료 어플은 현장용어 해석 품질 미흡)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구축·운용 비용

구분	내용
9. 스마트 위험성평가	■ 설치비용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유료 스마트위험성 평가시스템 720만원(30만원/월, 24개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10. 밀폐공간 유해물질 측정	■ 설치비용 : 유해물질 측정기(센서방식, 이동형) 120만원~160만원, 비상알림 사이렌(필요 시) 60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구축·운용 비용
11. 개구부개폐 여부 감지	■ 설치비용: 개구부개폐 여부 감지센서 20만원(마그네틱센서)~200만원(TOF센서), 비상알림 스피커(필요 시) 80만원 ■ 안전관리비: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2. 가설 흙막이 원격계측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흙막이자동계측 설 치·운용·보고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함.
13. 구조물 변위감지 장치	<ul> <li>■ 설치비용: 구조물 변위 감지센서 12만원, 위험 상황 알림장치 70만원, 근로자 안전모 부착형・안전탁끈 등 10만원</li> <li>● 안전관리비: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li> </ul>
14. 크레인 상·하차 알림 설치 가이드라인	■ 설치비용 : 크레인 상·하차 위험 알림 장치 : 120만원, 근로자안전모 부착형·안 전턱끈 등 : 10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5. 스마트 에어백	■ 설치비용 : 스마트 에어백(안전관제 App) 110만원 ■ 안전관리비 :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3. 전문가 의견조사

- 捧 전문가 의견은 2021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건설협회, 건설기업의 안전관 리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함.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와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전관리비 담당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설계단계에서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함.
  - 건설산업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관리 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도 제도적으로 보장됨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도 제도적으로 담당 자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구분이 불분명한 항목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집 행이 용이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및 정산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안전관리비 로 사용 가능한 세부적인 품목의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안전관리비는 현장 특성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요율화를 통한 계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많았음.
  - 특히,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공정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비용이 유동적이며, 필요할 때마 다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안전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요율화될 경우. 안전관리비용 계상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종 간 차이 및 공사 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율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요율의 결정에 있어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은 과소 책정의 우 려가 있기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율 결정이 필요함.
- 현재 안전관리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규모의 상향과 정산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타 안전관리비 항목에 비해 제도적으로 산정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 비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도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음.
  - 발주청의 경우 감사 등 사유로 공사감독자가 증액 설계변경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에, 현장에서 활 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산기준 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 안전장비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으나, 아직 장비 효율성 에는 의문이 있으며, 비용 계상·가이드라인·운영비용 등 구체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타워크레인 IoT CCTV 포함한 대다수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장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함에 있어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관련 비용 계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발주기관에서 설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운영·관리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안전장비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아, 축적된 자료가 미흡함.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현장에 필 요한 정확한 물량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사후정산하 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방안 IV

# 1. 안전관리비 계상 활성화 필요성

- (1) 건설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
  - 🕨 근래 산업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큰 변화가 있었음.
    - 다수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 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됨.

종합대책	시기	분야별 맞춤형 대책	시기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2017년 8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2017년 11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2018년 1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2018년 10월
공공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	2018년 7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2019년 4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2019년 3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2019년 7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년 4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2020년 6월

〈표 11〉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및 분야별 맞춤형 대책

####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2018.1)

- 🥦 명확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의 마련, 하청·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 주체별 위험 유발 요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주목할 점은 건설 부문의 발주자 책임 부여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법제화되고, 공공기관 발주자 책임 선도모델 정립이 추진되었음.
  -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분야로 건설업이 포함되어 단계별 위험요인의 관리 및 제재가 강화됨.

- □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4)
  - 🕨 2020년 4월에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서는 기계·장비 작업 안전성의 제고. 사업 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 현장 밀착형 개선과제를 제시함.
  - ▶ 취약분야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하여 민간건축공사 관리를 강화하고, 기계·장비 작업 안전성 제고, 고위험 공사의 추가적 감시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전 과정 정기안전점검 실시, 기계·장비 안전인증제 도입
    - 건설현장 실시간 감시 : 일정 규모(16층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 등
  - 🥦 사업주체별 안전 관련 권하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추가 부여함.
    - 안전비용 추가지급 :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수 임금 공사비 계상
    - 안전관리계획 미흡으로 사고 발생 시 공사 중지 등 추가 비용 발주자 부담
  - 🦫 시공자는 예방비용이 사고 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감리가 적극적 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시공자) 회사 규모별(매출액 등)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조정, 전문건설사 사망만인율 병행 산정, 하도 급계약 적정성 심사제 개선
    - (감리) 공공공사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 민간 공동주택공사 감리원 추가 투입, 감리원 선정평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 2019년 1월, 28년 만에 도급인·기업·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 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사업참여자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단계 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감소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 록 명시하고 있음.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계획 의무가 사업주에

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 발주자, 설계자 에게 관련 계획 작성 의무가 추가됨.

- (건설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발주자)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의 발주자는 사업단계별로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 장·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함.
- (사업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주는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시공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또한, 모든 사업의 시공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 시해야 함.

,— ·-, 2312—23- · · · · · · · · · · · · · · · · · · ·						
주체	게히 그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대상 기업 및 사업	작성 시기	
구세	계획 구분	개정 후	개정 전	내경 기합 및 자합	70 1/1	
건설회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제14조	_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매년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_		계획단계	
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제67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설계단계	
시공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2~43조	제48조	높이 31미터 이상,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등 해당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28조	제20~22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	니고다게	
	위험성평가	제36조	제41조의2	모든 사업	시공단계	

〈표 12〉「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참여자별 안전보건 주요 계획 의무

- 🝃 발주자의 경우,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산업재 해 예방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획단계)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 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설계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유 해·위험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 서에 반영해야 함.
  - (시공단계) 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해야 하며.

-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해야 함. 그리고 공 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2021년 5월 개정을 통해 발주자는 설계자 및 도급인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할 의무가 추가되었음('21.11.19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항은 적용받지 않음.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며,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됨(법 제2조제9호).
- 🕨 법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를 4가지로 구분하며, 이 중 2가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4가지 의무(법 제4조)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②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무, ③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의무
  - 8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시행령 제4조)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③ 전문인력 배치, ④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⑤ 안전보건 전담조직 마련, ⑥ 종사자 의견 청취, ⑦ 위기 시 대응절차 마련 및 확 인·점검, ⑧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 스마트 안전 관련 제도 변화

- 🦫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관련 제도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30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의무화됨(2019.4).
  - 이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설계 발주단계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해야 함.

- 🝃 공공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 리비) 개정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이 확대됨(2020.3).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용비용(안전관리비 ⑦ 항목)을 추가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
- 또한. 2020년 12월에는 동법 규칙 [별표 7] 개정을 통해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 사는 공사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가 의무화됨(2020.12).
  - 시공사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운영계획 내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를 계획해야 함.
- 🖿 2021년 9월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시행되 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 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대상)에서는 '무선안전장비와 융· 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 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사용·유지·대여 비용
  -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를 위 한 비용
  -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 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사용·유지·대여 비용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 (2) 안전관리비 활성화 필요성

- 🕨 최근 5년 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음.
  -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 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임.
  - 국내 산업현장 안전관리 체계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 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 하지만, 하도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 로 산업안전 제도가 변화하였음.
  - 최근에는 안전관리에 있어 발주자에게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하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재개정된 정부 제도에서는 발주청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안전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을 제공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
- 🤰 최근 스마트 안전장비와 건설현장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따라서 「건설 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적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를 활용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와 정책 및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발주기관에서는 「건설 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 제 도이나 현실적으로 민간공사에서는 설계 시 계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공공 발주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계상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 간공사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2.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방안

🛂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품질관리비가 있으며, 계상기준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계상 방법	일괄요율	직접 계상 + 요율	직접 계상	②항목 : 요율 타 항목 : 직접 계상
계상 비목	경비	직접공사비 and 경비	경비	직접공사비 or 경비
제도적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1]~[별표 3]	시행규칙 [별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비고	사업종류별 규모별 요율 기준 제시	직접공사비 산출기준 및 공사종류별 최저 요율 제시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 기준 제시	구체적인 산출 기준 제시 X

〈표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비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1]에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기준 을 제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경비에 반영해야 함.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 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직접공사비(직접 계상)와 간 접공사비(요율)로 구성됨. 직접공사비 산출기준은 [별표 2]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접공사비 산출기준은 [별표 3]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에 산 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 으며,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공정별 품질시험 종목과 투입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 어 있음. 품질관리비는 법적 요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 계상하여 경비의 품질관리비에 반영 해야 함.
- 안전관리비 : 7가지 항목 중 ②항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공사 종류 및 규격별 점검 대가가 요율화되어 있음, 특히 ③, ④, ⑤, ⑦항목 산정기준 은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안전관리비 ③항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직접공사비에도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④, ⑤, ⑦항목은 동일한 단서조항이 없어 경비의 안전관리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계상기 준은 제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설계단계에서 발주자가 안전관 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아저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요율화되어 있으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 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직접 계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②번 항목을 제외하면 제도적인 산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특히, ③, ④, ⑤, ⑦항목 산정기준은 매우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58개 사업 중 20개 사업(34%)에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항목을 제외한 안전관리비 활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현행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일괄요율 방식 이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함.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비 활용도가 낮고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비 요율 방식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안전관리비 요율화는 비용 계상 및 사용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으나, 요율화를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안전관리비 요율화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현실 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요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항목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 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방향



- (단기적 개선 방안) 국토부 혹은 발주기관별로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도출하 고 항목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비가 항목별로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후 요율 방식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자료 관리체계 마련
- (중장기적 개선 방안) 안전관리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비의 활용도를 제고한 후, 신뢰성 높 은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 특성별(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요율 방식 도입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swoolee@cerik.re.kr)